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2. 29. (전성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4. 3. 14.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 (전성균 의원)

가. 제안사유

- 1)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

나. 다만, 초·중등학교의 경우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를 근거로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감면 효과를 부여하고 있어, 유치원 또한 학교와 동일하게 [별표1]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대비표 별첨1)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1)

수정 대비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전	수 정 후
< 본 문 >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 <p>1. ~ 6. (생략)</p> <p>7.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현행 조례와 변동없음</p>

[별표 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제23조제1항 관련)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m ³)	요금(원)	비고
가정용	1	1~12	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급수장치의 급수는 가정용 1단계 요금으로 적용 • 선박용 급수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으로 적용 • 운반급수는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 수도관의 파손, 훼손 등에 따른 누수, 퇴수량은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 시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
	2	13~24	666	
	3	25 ~	999	
일반용	1	1~100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 적용 -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용 3단계 요금 적용 •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2	101~200	990	
	3	201~	1,155	
대중탕용	1	1~	967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m ³)	요금(원)	비고
가정용	1	1~12	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급수장치의 급수는 가정용 1단계 요금으로 적용 • 선박용 급수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으로 적용 • 운반급수는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 수도관의 파손, 훼손 등에 따른 누수, 퇴수량은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 시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
	2	13~24	666	
	3	25 ~	999	
일반용	1	1~100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 적용 -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용 3단계 요금 적용 •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2	101~200	990	
	3	201~	1,155	
대중탕용	1	1~	967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2. 29. (장철규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4. 3. 14.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장철규 의원)

가. 제안사유

- 1)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열거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교열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화성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나.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마련을 통하여 화성시 산업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